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
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[제20호, 2013.7.15., 일부개정]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103호, 2014.6.30.,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과</u> <u>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</u>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「주택법」 제21조의2, 제35조제1항과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</u>
제2조(적용의 특례) <u>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(이하</u>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(이하 "근로자주택"이라 한다)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(이하 "영구임대주택"이라 한다)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	(이하
제12조의2(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) ① (생 략)	제12조의2(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)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2조의3(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 서) ① 삭 제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.